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 중 22명(고위나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학예연구관 4명, 학예연구사 9명)을 증원하며, 나머지 2명은 국가보훈처 정원 2명(7급 2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 범위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명(5급 1명)은 다른 국립호국원의 정원을 재배치 활용하며,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상한선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처 등과 합의되었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을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해외교류업무의 종합·조정”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감독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괴산호국원”을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립산청호국원 및 국립괴산호국원”을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으로 한다.

제3장의2(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7조의2(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이라 한다)은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의3(관장) ① 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115명”을 “205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32명”을 “36명”으로 한다.

제28조 중 “2개”를 “3개”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13”을 “311”로 하고, 일반직 계 “310”을 “30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0”을 “29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71”을 “1,101”로 하고, 일반직 계 “1,071”을 “1,10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54”를 “1,08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8조의2제1항 관련)

1. 국가보훈처

조직	정원	평가기간
보훈예우국 1개 과	7명	2022년 7월 26일까지

2.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개 과	14명	2024년 6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처장 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대 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 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 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 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 호국원, <u>국립괴산호국원 및 국 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u>	제2조(소속기관) ① ----- ----- ----- ----- ----- ----- ----- ----- <u>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 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 리소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훈선양국) ① (생 략)	제11조(보훈선양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련 기념사업에 관한 <u>해외교류업 무의 종합·조정</u>	11. ----- ----- <u>사항</u>
12. ~ 14. 삭 제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의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u>

18. 삭 제	<u>넙관의 지도·감독</u>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 국립대전현충원, 국 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 ·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 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 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 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u>국립 괴산호국원</u> 및 국립신암선열공 원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 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5조(직무) ----- ----- ----- ----- ----- ----- <u>국립 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u>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소의 장) ① 관리소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명 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고, 그 밖의 관리소에 소장 또 는 원장 각 1명을 두되, 국립3· 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 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19민주묘지관 리소 및 국립5·18민주묘지관 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 원, 국립이천호국원, <u>국립산청</u>	제16조(관리소의 장) ① ----- ----- ----- ----- ----- ----- ----- ----- ----- ----- ----- <u>국립산청호</u>

호국원 및 국립괴산호국원의 원
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국원, 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
제주호국원-----.

②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7조의2(직무) 국립대한민국임
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
기념관”이라 한다)은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조사
·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의3(관장) ① 임시정부기념
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
다.

② 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
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
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
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과 1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생략)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
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
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
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 -----

-- 205명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36명-----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3개 -----

-----.

제28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u>국가보훈처</u> 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생략)	제28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 ----- ----- <u>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u> ----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13</u>	<u>311</u>	-2
•	•	•	
•	•	•	
일반직 계	<u>310</u>	<u>308</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0</u>	<u>298</u>	-2
•	•	•	

[별표 3]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71</u>	<u>1,101</u>	+30
일반직 계	<u>1,071</u>	<u>1,101</u>	+30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54</u>	<u>1,083</u>	+2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6